

삼척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 민 호	169
-------------	-----

제출년월일 : 1995. 4.

제출자 : 삼척시장

1. 제안이유

- 가.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실정임
- 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함
- 다. 불결하고 시설정비·보수를 요하는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명령과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지방자치단체장 판단 아래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 책무 및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 내지 제4조)
- 나.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과 시설의 유지·관리기준(안 제5조 내지 제12조)
- 다. 불량화장실의 시설개선명령, 유료화장실 승인,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안 제13조 내지 제19조)

3. 근거법령

- 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 나.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삼척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도·소매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타
4.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의 휴게소
7.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8. 도시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역
9.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종합여객시설
10.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11.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12.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13.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전문체육·종합체육시설
14.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15. 항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16. 기타 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제 2 장 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전체면적은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8개(남자용 3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5개이상 또는 5인용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규모는 가로 85센티미터이상, 세로 115센티미터이상 (양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130센티미터이상)일 것
3. 수세식일 것.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변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세면기, 거울 및 에어타월기(또는 롤로타월기), 10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하고 설치장소의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변기간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6.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를 부착할 것.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남자·여자 표지를 부착할 것.

제6조(기타시설) 시장은 공중화장실에 제5조의 규정된 시설이외에 필요한 경우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휴식시설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시설의 유지·관리

제7조(위탁관리 등)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관리인의 지정)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 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비누(또는 액체비누)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유지·관리기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衛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1일 3회이상 청소할 것.
2. 화장실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3회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생과 파리·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내·외부는 년1회이상 도색할 것.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시설의 정비·유지·관리상황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장실의 개방 및 비용보조) ①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개방화장실임을 알 수 있도록 적정한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 4 장 시설개선명령

제13조(시설점검) 시장은 공중화장실에 대해 제5조,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2회(상·하반기)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개선명령) 시장은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시설의 개선·청결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5조(개선명령의 이행기간등) ①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청결·도색 기타 경미한 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자에 대하여는 설치·관리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이행서를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유료화장실 승인

제16조(유료화장실 승인)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 시설내의 화장실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2. 전담관리인을 둘 것.

3. 화장지, 비누, 수건(또는 에어타월기)등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② 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시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것.

2.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금액을 초과 징수하지 않을 것.

3. 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를 부착할 것.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제 6 장 과태료 부과징수등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봉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항목별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④ 제1항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0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등록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 ④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みなす.

[빌 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 나.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사항	부과기준	부과금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위반한 때	제 5조			
가. 제5조 제1, 2, 3, 4호 위반		20	40	60
나. 제5조 제5, 6, 7호 위반		10	20	30
2. 관리인 미지정 및 청결관리에 소홀히 한 때	제 8조	10	20	30
3.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지 아니한 때	제 9조	10	20	30
4.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에 위반한 때	제10조	20	30	50
5. 유로화장실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17조 (제2호내 자) 제4호.)	20	30	50